

# 사고 접수 유의사항

※본 사고접수 유의사항은 청구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 및 가입증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유의사항과 약관 내용상 불일치가 있는 경우 약관의 내용에 의합니다.

## 제출서류

본 신청서와 함께 하기의 서류를 [chubb.kr/\\_Claim](http://chubb.kr/_Claim) (url - mobile, 인터넷 사고접수 site)으로 접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험금 청구서** (유첨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포함), 피보험자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2. 거래금액을 입증할 서류 및 인터넷화면캡처
3. 구매당시 판매자가 등재한 물품 사진 / 물품 수령 후 박스 및 손상품 사진
4. 택배사 배송 이력 화면 캡처
5. **파손시** : 수리비내역서 (파손품 수리시) / **번개장터의 화물수령확인서** (수리불가로 전손시)
6. **망실 (오배송)시** : **경찰서사고접수확인서** 등 판매자사기신고서류
7. 배송완료되었으나 **물품도난시** : 첨부의 운송인(택배기사 등)이 작성한 **도난확인증명서**
8. **분실** : 첨부의 운송인(택배기사 등)이 작성한 **분실확인증명서**

보상하는 손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장기간 중 목적물이 운송과정에 있어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b>망실, 도난, 파손 혹은 파괴</b> 되었을 때 아래와 같은 비용 또는 금액을 <b>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b>합니다. (1) 목적물이 파손되었을 경우, 수리비용 또는 물품구매금액 (2) 목적물이 망실/도난되었을 경우, 망실/도난에 상응하는 물품구매금액</li> <li>2. 손상의 정의 (1) <b>망실(분실 &amp; 오배송)</b> 가. 분실 :운송장번호 고지 후 <b>7일 (국내 운송일 경우)</b>이 지나도 물건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 (해외운송일 경우 30일) 나. 오배송: 주문한 물건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주문과 상이한 물건도착도 포함) (2) <b>도난</b>: 주문한 물건이 발송, 도착완료 이력이 확인된 이후 도난으로 도착하지 않은 경우 (3) <b>파손 및 파괴</b>: 배송 중에 발생한 파손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li> <li>3. 한 쌍이나 세트로 구성된 물품의 경우 물품을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개별적으로 수리, 대체할 수 없어서 전체세트를 수리, 대체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난, 파손 또는 분실된 <b>특정 부품의 가격에 한정하여 보상</b>합니다</li> <li>4. 한 쌍이나 세트 또는 모음으로 구성된 물품(보석류나 미술품 등)은 해당 물품이 한 쌍, 세트 또는 모음의 일부로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가치를 고려하지 않으며, 도난, 파손 또는 분실된 <b>특정 부품의 가격에 한정하여 보상</b>합니다</li> <li>5. 수리 또는 교환 시 발생하는 <b>배송비용은 수리비용 또는 대체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b></li> </ol>
유의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피보험자는 손상발견시 <b>지체없이 보험회사에 통지</b>하여야 합니다.</li> <li>2. <b>보험청구서</b> 및 피보험자 사고확인서의 모든 항목을 반드시 기입하고 사진 및 제출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li> <li>3. <b>사고일자</b>가 운송장번호가 고지된 날짜(보장개시일)로부터 30 일 내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4. <b>보험 가입은 운송장 입력 시</b> 이루어 지며, 보험금 청구는 운송장 입력 완료되어 보험증권 번호가 생성된 이후 가능합니다.</li> <li>5. 본 보험의 <b>보상한도액은 100 만원</b>입니다</li> <li>6. 망실의 경우, 판매자의 사기로 인한 사고(<b>오배송</b>)는 <b>경찰서사고접수확인서 등 판매자 사기신고서류, 분실은 운송인의 분실확인증명서</b>가 필요하고, 물품 <b>도난 시에는</b></li> </ol>

부담보 목적물  
(면책물품)

- 운송인(택배기사 등)의 도난확인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7. 피보험자는 목적물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절차를 취하여야 합니다. (수리 등)
  8. 망실로 인한 보험금 청구는 운송장번호 고지 후 7일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해외운송일 경우 30 일)
  9.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전손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손상품을 처리 또는 보유할 수 있는 권리를 자동적으로 취득하게 되며, 파손 물품은 변개장터에서 지정한 장소로 발송해야 하며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보험금은 변개장터의 물품수령확인서를 유첨하고 사고접수해 주셔야 확인 후 지급됩니다.

1. 금괴, 은괴, 고가의 보석, 금속, 스톤, 현금, 유가증권, 동등한 물품
2. 법률이나 규정 혹은 목적물이 수집되고 운송되는 관할지역에서의 법규에서 금지되는 품목
3. 식물, 동물
4. 온도변화에 민감한 화물, 부패성 화물
5. 운송업자의 운송장 상에 면책품목으로 명기된 여하의 목적물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파업, 폭동 및 내란위험
2. 운송약관 불이행 : 운송장 개시 후 피보험자에 의한 운송약관 규정의 불이행/규정위반
3. 사이버공격 : 컴퓨터시스템, 악성코드, 바이러스에 따른 손해는 부담보
4. 지연 : 어떠한 사유로든 지연으로 인한 손해는 부담보
5. 도급업자의 기술적결함 : 목적물 자체의 설계 또는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손상
6. 사기, 기만, 의도적인 행위 : 피보험자의 사기, 기만 혹은 부작위, 악의적인 행위, 범죄
7. 고유의 하자 및 구매한 물품의 기손상 부분 : 목적물 고유의 내재하고 있는 하자(잠정적인 하자)나 이미 손상된 부분은 부담보
8. 포장불량 및 잘못된 주소의 기재 : 포장불량 및 정확한 주소를 기재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9. 차압 : 목적물의 차압, 몰수, 구류, 억류로 인한 손해
10. 기계적, 전기적결함 : 운송 중 확연히 드러나는 외부 물리적손실에 의한 기계적, 전기적결함 손실이 아닌 내재적 결함은 부담보
11. 보통 누손 : 누손, 자연스러운 부피 및 무게의 감량, 일상적인 마모는 부담보
12. 방사능오염, 화학,생물학 무기에 의한 손상
13. 녹손, 산화, 퇴색으로 인한 손해 : 운송 중 확연히 드러나는 외부 물리적손실이 아닌 한 부담보
14. 전쟁, 테러
15. 담보에서 제외되는 면책물품(상기참조)의 손상
16. 가치하락 : 손해입은 목적물을 수리 혹은 복구함에 있어 발생한 가치하락 및 감가상각분은 담보하지 않음
17. 파손에 의한 클레임 청구시 파손물품의 배송비용은 부담보
18. 단순 변심에 의한 손해청구 또는 반송비용은 부담보

# 보험금 청구서(구매물품보상보험)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귀중

## 계약사항

보험증권번호		운송장번호	
피보험자		주민등록번호	
물품수취주소		연락처(휴대폰)	

## 사고내용 (구체적이고 상세히 기재 바랍니다)

사고일시	20    년    월    일	사고유형	<input type="checkbox"/> 파손 <input type="checkbox"/> 망실 <input type="checkbox"/> 도난
손상물품명세			
물품가액			
예상손해액/ 수리비			
운송장번호 / 택배명 / 택배기사연락처			
사고경위			

## 보험금 송금계좌

은행		계좌번호	
피보험자		주민등록번호	

##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소비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본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 관련 서비스가 일부 제한될 수 있고, 본 동의서에 의한 개인(신용) 정보 조회는 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1.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사항 (동의여부에 대해 V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계약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신용) 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 이용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보험금지급·심사(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포함) 및 보험사고 조사(보험사기 조사 포함), 보험금 지급관련 민원처리 및 분쟁대응
  - 금융거래(보험료 및 보험금 등 출·수납을 위한 금융거래 신청, 자동이체 등 접수) 관련 업무
-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보험금 청구서상 개인(신용)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증번호, 주소, 직업,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 계좌정보
  - 보험사고 조사(보험사기 조사 포함) 및 손해사정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신용)정보[경찰,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본인의 위임을 받아 취득한 각종조사서, 증명서, 진료기록 등에 포함됨]

개인(신용)정보 포함]

•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거래종료 후 5년간 (단, 거래종료 후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금 지급, 금융사고 조사, 보험사기 방지·적발,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보유·이용하며, 별도 보관)

2.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동의여부에 대해 V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계약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신용 정보집중기관 및 보험요율산출기관으로부터 조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개인(신용)정보 조회목적: 보험금지급·심사(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포함) 및 보험사고 조사(보험사기 조사 포함)
- 조회할 개인(신용)정보 : 보험계약정보, 보험금지급 관련 정보 (사고정보 포함)
- 조회동의 유효기간 및 조회자 (개인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 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거래종료 후 5년간 (단, 거래종료 후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금 지급, 금융사고 조사, 보험사기 방지·적발,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보유·이용하며, 별도 보관)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동의여부에 대해 V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신용정보집중기관 :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신용정보원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 공공기관 등 : 금융위원회, 국토해양부, 금융감독원, 보험요율산출기관 등 공공기관, 법령상 업무 수행기관(위탁사업자 포함)
  - 보험회사 등 :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국내·국외 재보험사, 공제사업자, 체신관서(우체국보험), 금융거래 관련 계좌개설 금융기관, 금융결제원
  - 업무수탁자 등 : 보험금지급·심사 및 보험사고조사 등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보험사고조사업체, 손해사정업체, 의료기관·의사, 변호사, 위탁 콜센터, 자동차보험의 경우 그 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손해보험협회 등)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신용정보집중기관 : 보험계약 및 보험금지급 관련 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 공공기관 등 : 보험업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동차보험에 한함) 등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위탁업무 포함)
  - 보험회사 등 : 보험사고조사 (보험사기 조사 포함) 및 손해사정서비스 등 계약 이행에 필요한 업무,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대행 서비스, 진료비 심사, 의료심사 및 자문, 구상금분쟁 심의업무 (자동차보험에 한함)
  - 금융거래 업무(보험료 및 보험금 등 출·수납)
  - 업무수탁자 등: 보험금 지급을 위한 심사·계약 관리 업무
-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의 정보내용(단, 각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에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제공받는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에 달성할 때까지 (최대거래종료 후 5년까지)
- \* 거래종료일이란 보험계약 만기, 해지, 취소, 철회일 또는 소멸일 및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일, 채권·채무관계 소멸일 중 가장 나중에 도래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 각 제공대상기관 및 이용목적의 구체적인 정보는 당사 홈페이지 [www.chubb.com/kr](http://www.chubb.com/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동의여부에 대해 V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기 개인(신용) 정보에 대한 개별 동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 정보(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운전면허증번호)를 처리(수집·이용, 조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운전면허증번호)처리
동의함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상기 내용과 같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아래 계약자 동의인 작성 및 서명해주시고 피보험자가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피보험자도 필히 동의인 서명해 주셔야 합니다.

**본인은 보험약관을 숙지하였으며 본 청구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없으며 만일 내용상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하게 됨은 물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하고, 귀사에 가입한 보험계약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오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사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상법 제 662조)  
본인은 보험금 청구 서류 접수 시 담당부서 및 연락처, 예상심사기간, 예상지급일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하며 기명날인 합니다.

동 의 일 20            년            월            일

동의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피보험자와의 관계
계약자/피보험자	(서명)		
법정대리인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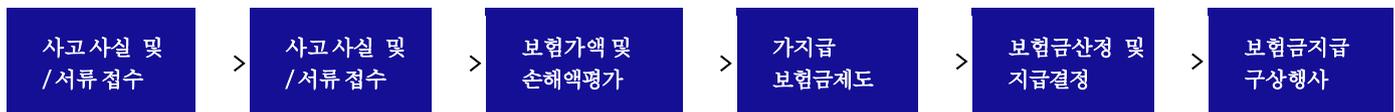
“보험사기(고의사고, 허위사고, 피해과장, 허위입원·진단·장해, 사고 후 보험가입 등)는 범죄이며 형법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저희 에이스손해보험을 성원해주신 고객님의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의 금번 사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보험금 청구에 따른 지급절차 등 중요 안내 사항을 아래와 같이 설명을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예상 심사기간 및 예상 지급일

- 회사는 보험금 등 청구 시 최종구비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해진 날로부터 7일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지급할 보험금액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상법 및 약관 규정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 지급예정일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설명하여 드립니다.



### 2. 담당부서 및 연락처

- 보험금 청구 서류가 접수되는 경우 보상처리 담당부서 및 담당자가 지정됩니다. 보험금 청구 서류 접수 전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 또는 해당 영업점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연락처
번개장터 고객센터	help@quicket.co.kr
에이스손해보험 콜센터	1833 - 4227

## 도난확인증명서

\_\_\_\_\_택배 회사(운송인)는 운송장 번호가 \_\_\_\_\_인 물건을 (주소)\_\_\_\_\_로 \_\_\_\_\_년\_\_\_\_월\_\_\_\_일 (배송일) 배송하였으나, \_\_\_\_\_택배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도난 사고로 물건이 수취인으로 지정된 \_\_\_\_\_님에서 전달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20    년    월    일

택배회사명 / 택배기사명 \_\_\_\_\_ (인)

## 분실확인증명서

\_\_\_\_\_택배 회사(운송인)는 운송장 번호가 \_\_\_\_\_ 인 물건을 \_\_\_\_\_년\_\_월\_\_일 배송 시작하였으나,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금일 \_\_\_\_\_년\_\_월\_\_일 까지 물건이 수취인으로 지정된 \_\_\_\_\_님에게 전달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20    년    월    일

택배회사명 / 택배기사명 \_\_\_\_\_ (인)